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41

발의연월일: 2021. 4. 27.

발 의 자:정운천·최형두·권명호

김도읍・윤창현・이종성

한기호 • 하영제 • 김성원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와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하여 전기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발전설비에서 수력발전설비가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양식 후 바다에 버려지는 배출수를 재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의 소수력발전(일반적으로 설비 용량 10,000kW 미만의 수력발전을 의미함)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결국 양식장에서는 배출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기 보다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력을 이용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력발전을 통 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법률 제 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을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및 수력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	③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	
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조에 따른 <u>태양에너지 및 연</u>	<u>태양에너지, 연료전</u>
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	지 및 수력을
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	
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	
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	
하여 대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